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4. 11. 29
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달서구청장

나. 제출일자 : 94. 11. 10

다. 회부일자 : 94. 11. 24

라. 상정일자 : 94. 11. 28

2. 제안설명요지(설명자 : 재무과장 김낙훔)

가. 제안이유

관서당경비의 물품매입품의 요구생략 조항을 삭제하고 불용품 매각시 감정액을 상향조정,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 출납원의 법정장부 축소, 비품구분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자 함.

나.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100조 및 제111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96조제2항, 제124조 및 제161조제2항

다. 주요골자

○ 관서당경비의 물품매입품의 요구생략조항 삭제(안 제8조)

○ 불용품 매각시 감정액 500만원이상에서 1천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안 제17조제4항)

○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의 장부중 소모품대장 삭제하여 법정장부 축소 (안 제24조)

○ 품종구분 기준의 비품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안 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백창기)

○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 준칙에 의거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한 것이며 본 개정조례 전반적인 사항을 볼 때 관서당 경비의 물품매입품의 요구생략조항을 삭제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기하게 하였으며 불용품 매각시 감정액을 상향조정하여 감정수수료 비용을 절감시키고 출납원의 비치 장부를 축소 및 비품취득단가 상향조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불용품 매각시 감정액 기준을 5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므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바람.

5. 수정안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반대 : 없음

7. 첨 부 :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다음 페이지에 계속)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 …… …… …… ……〈삭 제〉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③(생략)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⑧(생략)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③(현행과같음) ④ …… …… …… ……단가 1천만원 …… …… …… …… ⑤~⑧(현행과 같음)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소모품대장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 …… …… 1. …… 2. …… 3. …… 4. 〈삭 제〉

현 행	개 정 (안)
5. 도서대장	5. ……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② ……, 〈삭제〉, …… …… …… ……
〔별표 1〕 물품의 품종 상태 구분	〔별표 1〕 물품의 품종 상태 구분
○ 물품의 종류(생략)	○ 물품의 종류(현행과 같음)
○ 품종구분 기준	○ 품종구분 기준
(1) 비품 – ①내용연수가 1년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 ③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1) 비품 – ①…… …… …… ②…… ……10만원 이상 …… ③…… ……
(2) 소모품(이하생략)	(2) 소모품(현행과 같음)